

# 『하나뉴딜국가대표성장펀드』 2022년 선정계획 공고

『하나뉴딜국가대표성장펀드』의 2022년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선정 개요

항 목	세부내용
위탁운용금액 및 선 정 운용사수	<b>블라인드펀드</b> 위탁운용금액 : 100억원 이내 선정 운용사 : 1개사
운 용 사 신 청 자 격	○ 「정책형 뉴딜펀드」 2022년 정시 블라인드펀드 선정 운용사* * 기업투자형, 성장금융 주관(소형), ** 재원 미소진 시 「정책형 뉴딜펀드」 기업투자형 정시사업(2차) 또는 수시사업으로 전용 예정
출자대상 투자기구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지원 시 경영참여 목적 투자 여부 명시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 상기와 유사한 목적의 국내외 집합투자기구, 투자조합 포함 - 공고일 시점의 현행 법규에 따른 적법·유효한 투자기구일 것을 요하되, 펀드 결성시 별도 협의 ※ 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용사가 관련 법규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투자기구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운용 자격을 갖추고 있고, 본건 펀드의 운용에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결성 전까지 신청 투자기구에 대한 변경 가능
운 용 사 선 정 방 법	○ 홈페이지* 내 선정공계획 공고 등을 통해 한국성장금융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 - 운용사, 운용인력, 펀드운용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 <a href="http://www.kgrowth.or.kr">www.kgrowth.or.kr</a> ○ 하나금융그룹과 제안사·제안펀드 및 제안펀드 내 피투자기업 간의 협업 방안 또는 시너지 창출방안을 제시할 경우 그 타당성 및 유효성을 판단하여 운용사 선정과정에 반영
접수일시	「정책형 뉴딜펀드」 블라인드펀드 정시·수시 선정 운용사 대상 개별 안내
심사결과 발 표	2022년 6월 중순 예정 * 지원결과, 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펀 드 결 성 시 한	2022년 10월 6일(정책형 뉴딜펀드 2022년 1차(기업투자/소형) 펀드 결성시한과 동일) (협의 하에 2개월 이내 연장가능)

## 2. 선정 기준 및 의무비율

세부내용	
○	주목적 투자대상 및 의무비율은 기 선정된 정책형 뉴딜펀드 제안 조건과 동일하되, 하기 사항을 추가하여야 함
○	(협업방안) 제안펀드·제안사·피투자기업과 하나금융그룹간 시너지 창출 및 협업 방안을 제안 운용사가 자율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안은 구체적·현실적으로 작성하되, 규약에 반영 필요</li> <li>- 제안펀드 수탁은행을 하나은행으로 지정해 제안할 경우 선정 시 규약 반영 예정</li> </ul>
○	(기술금융) 우수 기술기업*에 투자집행금액의 80% 이상 투자 <p>*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투자용 TCB 기술등급이 상위5등급(T15) 이상이거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발명진흥법’에 따른 기술가치평가를 받은 기업</p>

## 3. 주요 출자조건

항 목	세부내용
출자비율	○ (블라인드) 목표 결성금액의 40% 이내
운 용 사 출자비율	○ 약정총액의 1%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 운용의 경우 위탁운용사는 각각 약정총액의 의무출자비율 이상 출자, 운용사 계열사의 출자금액은 의무출자비율 산정에서 제외함</li> <li>* 유한회사(LLC)의 경우 운용인력 출자금액은 운용사 출자금액으로 인정</li> </ul> ※ 운용사 우선손실충당 설정 의무 없음
존속기간	○ 펀드 결성일로부터 10년 이내
투자기간	○ 펀드 결성일로부터 5년 이내
납입방식	○ 수시납(Capital call) 또는 분할납
운용보수 및 핵심 운용인력	○ 운용보수: 기 선정된 정책형 뉴딜펀드 제안 조건과 동일 ○ 민간출자자 인센티브/운용사 추가 인센티브: 기 선정된 정책형 뉴딜펀드 제안 조건과 동일 ○ 핵심운용인력: 기 선정된 정책형 뉴딜펀드 제안 조건과 동일

항 목	세부내용
출 자 자 제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자자는 국내 기관투자자, 법인이 원칙</li> <li>- 단, 개인출자자(운용인력, 특수관계인 등), 타 집합투자기구(사모투자신탁 등), 해외출자자 등은 한국성장금융 앞 사전협의</li> </ul>
수탁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성장금융이 제시하는 금융기관 Pool에서 선정</li> <li>○ 펀드자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의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li> </ul>
회 계 감 사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성장금융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감사인 선정</li> </ul>
펀 드 전자보고 시 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펀드 전자보고 시스템 사용 의무</li> <li>○ 펀드운용 등에 대해 출자 한국성장금융이 지정하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보고</li> <li>○ 시스템 구축 및 사용 비용은 운용사가 부담</li> <li>○ 기타 사항은 기 선정된 정책형 뉴딜펀드와 동일</li> </ul>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공고에 의해 운용사가 제안한 출자조건(출자금액, 보수, 인센티브 등)의 적용 여부는 선정 후 최종 결정 예정임</li> <li>- 결성 과정에서 정책형 뉴딜펀드와의 원활한 매칭을 위해 주요 출자조건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한국성장금융과 개별 협의하여 변경 가능</li> <li>○ 최다출자자 우대</li> <li>- 출자자 모집과정에서 최다출자자에 한해 관리보수 등 일부 출자조건을 우대적용(예: 관리보수 인하) 가능</li> <li>○ 미합중국의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최종 시행규정(Volcker Rule Implementing Regulations) 등을 준수해야 함</li> <li>○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기 선정된 정책형 뉴딜펀드 제안 조건 및 사모투자 일반 관행에 따름</li> </ul>

#### 4. 선정 배제, 취소 기준

기 공고('22.1.7.)된 정책형 뉴딜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와 동일

##### □ 선정 배제

-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운용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사유로 펀드의 적법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시점 현재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바 있거나, 시정명령 이행 실적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
- ※ 다만, 본 펀드 운용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내역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정 배제사유에서 제외 가능함
-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2년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위탁운용사로써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등 펀드 운용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위탁운용사로서 독립적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 펀드의 핵심운용인력과 운용사 대표이사가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감독 당국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 위탁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의 진행,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 경영권 불안정, 운용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책출자자가 출자한 펀드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의무의 불이행 행위 등을 한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의적 누락 또는 중대한 오류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공고일 이후 위탁운용사 또는 제3자가 출자자의 선정 절차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 선정 취소

- 펀드의 목표결성금액(조정된 경우 조정 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본 펀드의 출자조건을 위탁운용사가 수용하지 않아 규약(정관)협의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 위탁운용사가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 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탁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 제재 사항 및 기타

### 기 공고(“22.1.7.)된 정책형 뉴딜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와 동일

#### □ 제재 사항

- 결성시한(협의에 의한 연장기간 포함) 내 펀드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위탁 운용사 또는 선정이 취소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각각 결성시한 또는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할 수 있음
  - 다만, 관련 법규상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해 펀드결성이 지연될 경우 제재부 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함
- 선정된 펀드가 존속기간 중 규약(정관)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대해 1년 이하 출자 제한하며, 기지급된 관리보수를 환수 하거나 성과보수를 미지급할 수 있음
- 선정된 운용사가 출자확약서 등의 제출에 따라 우대를 받았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5년 이하 출자 제한되고, 실제 출자금액이 당초 제출한 출자확약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할 수 있음
- 출자대상 투자기구 결성일로부터 1년 경과 시점까지 최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자대상 투자기구를 해산할 수 있음
- 펀드 운용현황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며, 동 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출자사업에 제안시 감점(가점)되거나, 3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할 수 있음

#### □ 기타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 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 특히, 운용사 및 운용인력의 투자실적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허위,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누락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선정 이후 에도 선정을 취소하며 확인일로부터 5년 이하 출자 제한함
- 제안서 작성기준일은 **2021.12.31**로 하며, 핵심운용인력 등의 참여 인력은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함

## 6. 선정절차 및 문의방법

### □ 선정절차

- 공고 → 제안서 접수 → 서류심사(1차심사) → 구술(제안)심사(2차심사) → 최종 선정

### □ 출자 설명회

- 2022년 5월 3일(화) 홈페이지 게시 예정

### □ 문의방법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아래 이메일을 통해 협의(문의사항 집계, FAQ작성 등을 위해 유선 문의 최소화)
  - 한국성장금융 신사업금융1팀(02-2090-9173, jaeyi@kgrowth.or.kr)

◇ 상기 외 사항은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운용사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

2022년 5월 2일

한 국 성 장 금 융 투 자 운 용